

사단법인 글로벌디아스포라 다문화코칭네트워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글로벌디아스포라 다문화코칭네트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Global Diaspora Multicultural Coaching Network”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세계화된 다문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유능한 상담 및 코칭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심리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글로벌 문화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신안빌딩 7층 글로벌디아스포라 다문화코칭네트워크 사무국”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프로그램과 코칭서비스 제공
2.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자국어 코칭 인력양성사업
3. 다문화 관련 학술활동 및 연구
4.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위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모든 수입은 제2조의 공익목적 달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각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준회원의 경우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 발의, 의결권 등 총회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1인

②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0조 ③에 의거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시,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제11조 2항에 따른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12월)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전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 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⑤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주요사항

제21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에 대한 문서 등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한 회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업무)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⑥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 지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결은 서면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 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의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기부금의 운영관리)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 제39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정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4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비고
이사장	권수영	(044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24-10, 1동 201호	3 년	
상임이사	장석연	(04153)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독막로 266, 태영아파트 107동 901호	3 년	
이사	고기원	(17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동백평촌로 15, 1406동 403호	3 년	
이사	김재진	(135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59, 515동 1802호	3 년	
이사	김학중	(1550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꿈의교회	3 년	
이사	유영권	(0628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0, 205동 1207호	3 년	
이사	최양숙	(08741) 서울 관악구 솔밭로 7길 16, 302동 904호(봉천동, 낙성대현대홈타운 아파트)	3 년	
감사	강철희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31, 경 희궁뜰 302호	3 년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직 위	성 명	연락처	기명날인	비고
이사장	권수영	010-8960-2997		
상임이사	장석연	010-4147-6706		
이사	고기원	010-5544-8002		
이사	김학중	010-3662-0101		
이사	김재진	010-9025-9219		
이사	유영권	010-5552-2919		
이사	최양숙	010-3276-5377		
감사	강철희	010-8809-3449		

[별지]

기본재산 목록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평)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1계좌	금 25,000,000원	은행 예금
주식	주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금 25,000,000원	은행 예금 계좌
건물	m ²		
임야(林野)	m ²		
etc	m ²		
【부동산 소계】	m ²		
기타			
【합 계】		금 25,000,000원	은행 예금 1계좌

[붙임 1]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2) 이사장의 인

3) 계 인

